

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등 참조).

## 3. 판결 - 선행 성실수행 판정 후 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시 제재 적법

- (1)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검증평가를 한 결과 원고가 '성실수행'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가 면제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료비가 이 사건 과제를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 (2) 성실성검증평가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주로 연구개발 수행행위를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실패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이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실성검증평가도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연금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4. 판결 - 성실수행의 용도외사용 사업비 환수처분은 적법 BUT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위법**

- (1) 원고가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거나 과제와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과제와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입한 재료가 과제 수행에 사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사업비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성실성검증평가 결과 성실수행 판정까지 받았다. 원고는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출연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행정기본법 제18조와 제1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에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처분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게 갑작스러운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성실수행 판정을 받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가 면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그 사이에 소명자료가 산일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4) 중소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긴 기간 기술 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출연금이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  
록 할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도 없다.

- (5)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출연금 환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고, 참여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직권취소,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